신한p ay 스퀘어

대 관 규 약

대 관 규 약

■ 총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약은 주식회사 인터파크가 운영하는 신한 pLay 스퀘어(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내라이브홀, 드림홀 및 부대 시설의 운영 관리 및 대관에 대한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1) "대관"이라 함은 대관자가 '공연', '전시',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대관자"라 함은 이 내규를 인정하고 인터파크와 대관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 (3) 대관의 범위는 신한 pLay 스퀘어의 공연, 전시를 위한 기본시설과 부대설비의 사용을 포함한다.
- (4) 하우스티켓이라 함은 이중예매 등 티켓판매사고 또는 각종 긴급사항에 대비하여 대관자가 인터파크에 제공하는 공연에 대한 비매품 티켓을 말한다.

제 3 조 대관의 종류

- (1) 대관의 종류는 대관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준비대관(준비, 철수, 철야대관)으로 구분한다.
- (2) 정기대관은 매년 차기 년도 개시 전에 인터파크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을 받아 승인, 확정한다. 단, 인터파크가 인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 외의 공연도 신청, 승인할 수 있으며 본 항의 경우 인터파크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 (3) 제 2 항의 정기신청기간 내에 접수한 대관신청의 심사승인 후 잔여 일정 발생 및 대관 취소 경우에는 수시로 대관신청을 추가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4) 수시대관은 당해 연도에 잔여일정 발생시 가능하다.

■ 대관료

제 4 조 대관료 산정

대관료는 인터파크가 정하는 대관료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한다.

제 5 조 대관 계약금 및 잔금 납부

(1) 대관자는 대관 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기본 대관료의 50%를, 입장권 판매 개시 전까지

신한 pay 스퀘어

나머지 50%를 인터파크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 (2) 공연준비대관 시작일 이전에 발생하는 추가대관료는 발생즉시 납부해야 하며, 이후 발생한 대관료는 공연 종료 후 7일 이내에 납부 정산한다.
- (3) 대관자가 부대설비사용료 및 추가대관료 등을 미납했을 경우 인터파크는 대관자가 인터파크에 대하여 가지는 티켓판매대금 정산대금 채권에서 해당 미납금을 만족하는 만큼을 대관자에게 양도 받아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권 판매대행금액 정산 시 대관사용료 해당 금액 공제 후 지급한다.
- (4) 주 8 회 이상 장기대관공연인의 경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로 정하여 공연, 전시를 하지 않고 대관료를 산정하지 않는다.
- (5) 대관자의 요청으로 대관 기간 내 휴관할 경우 공연, 전시를 하지 않은 날도 공연 1 회기준, 전시 1 일 기준 대관료를 납입해야 한다.
- (6) 대관자가 대관료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인터파크는 대관승인 및 대관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대관자가 기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7) 관리비는 매월 초까지, 전월에 대관으로 발생한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냉/난방비, 청소, 기타용역비를 실비로 산정하여 대관자에게 통보하고 대관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대관료 반환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터파크의 승인 하에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신한 pLay 스퀘어 내에서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
- (2) 인터파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
- (3) 부대설비 신청 후 사용 7일 전 취소한 경우 (100% 반환)
- (4)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연준비대관일로부터 180 일전에 대관취소를 신청하여 인터파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납부액의 50% 반환)

■ 대관신청 및 승인

제 7조 대관신청

- (1) 대관신청인은 대관 신청 시 '대관신청서', '공연, 전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한다.
- (2) 대관계약 후 추가되는 일정 및 부대시설사용신청 등은 소정의 양식으로 갈음한다.
- (3) 다음과 같은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공연, 전시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② 신한 pLay 스퀘어의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신한 pLay 스퀘어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③ 계약 체결 후 대관취소를 하거나 또는 작품변경을 2회 이상 한 단체 또는 개인
- ④ 대관료 미납 또는 체납된 단체 또는 개인
- ⑤ 특정한 종교나 정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공연, 전시를 진행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⑥ 기타 작품 내용, 수준이 롯데카드 아트센터에서 수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
 - ⑦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청

제 8 조 대관승인

- (1) 인터파크는 대관신청 접수 후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관 신청인에게 서면 [대관승인서, 대관불가통지서]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 (2) 인터파크는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3)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인터파크와 대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4) 대관자는 인터파크가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대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5) 공연, 전시에 필요한 부대설비사용은 대관계약 후 '부대설비 사용신청서'를 스탭회의 직후 인터파크에 제출해야 한다.

■ 대관승인취소, 변경금지, 공연/전시의 취소

제 9 조 대관승인취소 및 신청자격제한

-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경우 대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인터파크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①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 ② 인터파크가 지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③ 인터파크가 지정한 기일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인터파크의 승인 없이 입장권 또는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
 - ⑤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 ⑥ 국가기관(공공기관)의 행정지도, 권고, 감사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
 - ⑦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공연, 전시 대관 취소의 경우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연, 전시에 임박하여 대관취소를 할 경우에는 다음 대관 시 제 7 조에 의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0 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 11 조 공연, 전시 내용 변경금지 및 대관취소

- (1) 대관자는 대관 신청 시 명시한 내용 (작품명, 작품일정, 출연자, 작품내용, 주최자, 작품 가격 등)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터파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대관계약 후 또는 공연기간 중 발생하는 공연대관 취소 분의 기납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3) 준비기간이 시작된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기간 중 공연, 전시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관자는 공연, 전시 대관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 (4) 인터파크는 대관자가 공연장과 전시장, 또는 부대시설사용에 있어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대관료를 부과한다.
- (5)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6) 대관이 취소된 경우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제6조에 의해 처리된다.

제 12조 공연, 전시 취소 및 중지

- (1)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 전시가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대관자는 교환과 환불, 기타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2) 천재지변으로 공연, 전시가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인터파크는 취소된 공연, 전시에 대하여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고 대관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게 책임을 지는 이외에 상호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

■ 공연장사용 및 안전관리 의무사항

제 13 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1) 대관자는 신한 pLay 스퀘어의 시설 설비의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인터파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 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인터파크에서 먼저 철거 또는 폐기한 후 대관자가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단, 인터파크가 철거 시 설치물의 손상, 파손 등에 대해서는 대관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인터파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변상하지 않는다.
- (2) 대관자는 운영사의 시설물 철거요청에 즉시 응해야 하며 인터파크의 철거요청 통지로부터 3일이내 즉시 철거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무대, 전시물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는 대관자의 책임 하에 공연, 전시 종료 시반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신한 pLay 스퀘어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되, 특히 무대장치나 장치물의 경우 필히 방염을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다해야 한다. 인터파크의 요청시 대관자는 무대장치나 장치물 등 외부에서 반입된 장비에대하여 방염 및 전기안전검사 등 각종 안전검사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는 필증 등을 인터파크에제출하여야 무대장치나 장치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2) 인터파크는 공연이나 행사, 전시 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3) 대관자는 인터파크에서 정하는 신한 pLay 스퀘어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4)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5) 대관자는 신한 pLay 스퀘어 부속시설(열쇠, 분장실집기, 비품 등) 파손 시 인터파크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6) 대관자는 신한 pLay 스퀘어에 화환을 반입하는 경우, 공연 종료 시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철거비용 및 환경정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7) 인터파크는 대관기간 중(준비 및 마무리시간 포함)공연, 전시와 관련하여 발생할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8) 대관자는 인터파크가 어떠한 제 3 자로부터도 공연, 전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인터파크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 (9) 공연, 전시와 관계되는 판촉, 사인회, 리셉션은 인터파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 시 사용료를 납부한다.
- (10)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인터파크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입장권발행, 판매 및 매표, 수표관리

제 15 조 입장권 발권

(1) 대관자는 판매대행사인 인터파크를 이용하여 입장권을 발권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그이외의 대행사를 이용할 경우 인터파크와 협의할 수 있다.



- (2) 신한 pLay 스퀘어의 좌석은 총 424 석(객석 1 층(가변) 295 석 / 휠체어석 5 석 포함, 객석 2 층(고정) 129 석)이며 가변석은 스탠딩석으로 활용 가능하다.
- (3) 인터파크는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된 일부 좌석을 하우스티켓으로 유보 및 사용하며, 일반에게 판매하지 않는다.
 - 신한 pLay 스퀘어 라이브홀 좌석타입 : 총 10 매

[1층: 6열 17번~20번(4매), 7열 22번~27번(6매)]

- 신한 pLay 스퀘어 라이브홀 - 스탠딩타입 : 총 14 매

[1 층 : B구역 181 번~190 번(10 매), 2 층 : Z구역 1 열 1 번 ~ 4 번(4 매)]

- 신한 pLay 스퀘어 드림홀 : 총 8 매 [B구역 6 열 8 번 ~ 11 번(4 매), C구역 5 열 1 번 ~ 4 번(4 매)]

- (4) 대관자는 입장권을 임의로 추가 또는 초과 발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행할 시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으며, 인터파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수 있다. 또한 인터파크는 공연장 입장을 제한, 거부할 수 있다.
- (5) 교환권은 반드시 인터파크의 사전승인을 받고 인터파크의 전산으로 발권해야 한다.
- (6) 대관자는 입장권 판매시 인터파크회원 및 관계사 회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6 조 입장권 판매 및 매표, 수표관리

- (1) 대관자는 고객의 편의와 원활한 티켓발권 서비스를 위하여 공연장에 입점되어 있는 티켓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사전 협의할 수 있다.
- (2) 입장권 매표는 사용자 책임으로 하며 수표는 인터파크에서 전담한다.

■ 홍보물, 방송 협의

제 17 조 광고 흥보물 협의

- (1) 대관자는 공연, 전시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신한 pLay 스퀘어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파크 내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2) 대관자는 신한 pLay 스퀘어에 광고, 홍보물을 부착/설치 할 경우 인터파크가 지정하는 장소에 따라 게시하며, 장소에 따라 게시료가 발생될 수 있다.

제 18 조 방송중계, 판촉

신한 pLay 스퀘어에서 행해지는 공연, 전시를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인터파크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대해서는 인터파크와 협의해야 한다. 이로 인해 관람에 방해가된다고 판단될 경우 인터파크는 필요 좌석의 판매를 유보할 수 있다.



■ 공연, 전시 진행 및 스탭회의

제 19 조 공연진행협조

(1) 스탭회의

- ① 대관자는 작업일정, 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사용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공연, 전시 준비대관 시작일 최소 15일전까지 인터파크의 주관 하에 스탭회의를 해야 한다. 스탭회의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는 준비대관시작 2일전까지 인터파크 기술팀 및 운영팀과 사전 협의 해야 한다.
- ② 대관자는 스탭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인터파크 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2) 무대진행 및 백스테이지 관리

- ① 대관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장치 및 장비설치는 기술 검토 후 인터파크 관리감독 하에 작업해야 한다.
- ② 공연과 관련된 무대진행상의 책임은 대관자가 선정한 무대감독에게 있으며,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장비의 안전과 관리 등의 일반적인 무대진행에 관한 책임은 인터파크 무대감독이 진다.
- ③ 백스테이지 출입은 인터파크에서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한 자만 가능하며, 대관자는 백스테이지 출입 명단을 공연준비대관 시작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연진행

- ① 공연당일의 진행은 공연시작 1시간전부터 공연종료 마감까지를 말한다.
- ② 대관자는 인터파크의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공연진행 중 문제 발행 시 인터파크의 무대감독 또는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 ③ 대관자는 공연개시일 전까지 인터파크가 요구하는 수량의 (공연당 최소 30부) 포스터와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한다
- ④ 공연진행과 관련한 하우스운영(객석관리, 공연진행, 안전관리 등)은 인터파크의 하우스매니 저가 총괄 운영하되, 경우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칙

제 20 조 안전관리

(1) 대관자는 대관기간 동안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고,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터파크의 안전에 관한 권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용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대관자는 인명, 재산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인터파크에게 피해가 없도록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터파크가 사전에 승인하는 조건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의 사본을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인터파크에게 교부한다. (3)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인터파크가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21 조 보수 및 시설점검

- (1) 인터파크가 **신한 pLay 스퀘어** 및 부대시설에 대한 안전, 개량, 유지보수를 위해 보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대관자와 협의하여 공연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한다. 대관자는 인터파크의 보수공사에 대하여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2) 관계법령이나 행정관청 등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 등이 **신한 pLay 스퀘어**나 부대시설에 대해 안전, 소방, 위생 등에 관하여 정기 또는 특별 점검을 하는 때에는 대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점검으로 인하여 대관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인터파크는 이에 대하여 면책된다.

제 22 조 지식재산권등 침해금지

대관자의 공연이 제 3 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인터파크에게 대관금지 또는 기타 청구가 있을 경우 대관자가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제 3 자가 인터파크에 직접 청구하였을 경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인터파크를 면책하고 방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파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비용을 포함하여 인터파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3 조 비밀유지

대관자는 대관계약내용 및 인터파크로부터 제공받거나 알게 된 경영, 영업, 재무, 고객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 24 조 규약의 효력 및 적용시기

- (1) 본 규약은 계약 당사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2) 본 규약은 2012 년도 10월 이후 공연, 전시를 위한 대관계약부터 적용되며, 대관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25 조 책임

대관자는 인터파크가 대관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제 3 자로부터 청구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 대관자 자신의 책임으로 인터파크를 방어하고 면책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파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법률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제 26 조 관할법원

신한 pay 스퀘어

이 규약에 따른 분쟁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